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829
----------	------------

제안년월일 : 2025년 6월 17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해 줄 필요가 있음.

2. 수정의 주요 내용

- 이 조례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을 목적에 명확히 함(안 제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시장제출안)	수정안(위원회안)
<u>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u>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와 같다.

1. “공공 야간약국
“(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
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
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
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 내에 의
약품과 의약품
을 제공하기 위하
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
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
간대를 말한다.

와 같다.

1. “공공심야약국”
(이하 “심야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
조에 따라 개설등
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
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
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
간에 의약품과 의
약품을 제공하
기 위하여 서울특
별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
한다.

2.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
간”이란 매일 오
후 10시부터 다
음 날 오전 1시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까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u>야간약국</u> 의 지정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u>노력한다</u> .	① ---- <u>심야약국</u> ----- ----- ----- ----- ----- ----- <u>노력하여야 한다</u> .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u>야간약국</u> 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u>하여야</u> 한다.	② ---- <u>심야약국</u> ----- ----- ----- <u>노력하여야</u> -----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u>노력</u> 한다.	③ ----- ----- ----- ----- ----- <u>노</u> <u>력하여야 한다</u> .	③ (개정안과 같음)
제4조(<u>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u>) ① 시장은 <u>시민 등에게</u>	제4조(<u>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u>) ① --- -- <u>심야약국으로</u>	제4조(<u>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u>) (개정안과 같음)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

----- 심야약국을 -----
-----.

② -----
-----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삭 제>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 ① 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

②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 (개정안과 같음)

야 한다.	--.	
② 시장은 <u>야간약국</u> 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 <u>심야약국</u>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u>야간약국</u> 의 운영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u>소관 상임위원회</u>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u>심야약국</u> ----- ----- <u>소관 상임위원회</u> ----- -----.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홍보) 시장은 <u>야간약국</u> 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홍보) ----- <u>심야약국</u> ----- ----- -----.	제6조(홍보)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야간약국”을 “심야약국”으로,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야간약국”을 “심야약국”으로, “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을 “(심야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 등에게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

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를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로, “야간약국을”을 “심야약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을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야간약국의 관리)”를 “(심야약국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간약국 근무 약사”를 “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야간약국”을 각각 “심야약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야간약국”을 “심야약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일 야간 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u>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 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에 의약품과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
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등에게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심야약국-----

-----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심야약국-----
----- 노력하여야 -----
-----.

③ -----

-----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야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

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상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시장은 야간약국이

심야약국을 -----.

② -----
--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삭 제>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 ① 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
----.

② ----- 심야약국-----
-----.

③ ----- 심야약국-----

----- 소관 상임위원회-----
-----.

제6조(홍보) ----- 심야약국----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